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안)

검토보고

운영위원회(구의회사무국)

의안번호	제72호
제 출 자	임현주 의원 외 5명
의 안 명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안
검 토	전문위원 유천곤

1. 제안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면에 관한 권한이 지방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성북구의회 소속 공무원 징계와 관련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규칙안의 제정목적 (안 제1조)

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 적용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다. 경고조치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공무원법¹⁾, 지방자치법²⁾, 지방공무원 징계규칙³⁾

-
- 1)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 2) **제103조(사무직원의 정원과 임면 등)**
②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

나. 예산조치 : 필요시 편성

다. 입법예고 : 2022. 11. 10. ~ 2022. 11. 15.

4. 검토의견

-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구의회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임면, 징계 등에 관한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성북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검토 결과, 성북구의회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규칙의 제정은 적절하다고 사료됨.

3)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혐의 당시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 수사 중 공무원의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평소 행실, 공적(功績), 우수치는 정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 업무 처리의 적극성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 별표 1의2의 초과근무수당 및 여비부당수령 징계기준, 별표 2의 청렴의무 위반 징계기준, 별표 2의2의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 사건 징계기준, 별표 3의 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별표 4의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해야 한다.

제9조(위임 규정) 이 규칙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교육규칙과 의회규칙을 포함한다)으로 정한다.